

# 부 산 지 방 법 원

##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15831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경상남도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5. 28.

##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241,689,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0.부터 2014.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6,095,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0.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 1) 원고는 2009. 10. 18. 20:0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1022 지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물금고개에 있는 내리막길 선형 개선공사구간을 원동방면에서 물금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한전주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철제 가드레일을 약 8m 가량 제거한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서 그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손상에 따른 사지마비로 운동장애, 보행장애, 배변장애 등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장애 1급 상당의 중증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도로 중 경사 및 굴곡이 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고지점이 포함된 그 일대의 도로부분에 관하여 2009. 8. 1. 늘푸른건설 주식회사와 서부도로 선형개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사건 사고 당시 늘푸른건설 주식회사가 그 일대에 위 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한국전력공사 양산지점이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한전주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가드레일을 약 8m 가량 철거한 지점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가드레일이 철거된 위 지점을 통과하면서 그 아래 약 5m 가량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었으며, 원고가 추락한 지점 바로 옆에는 전주이설공사를 위하여 차량통행 등에 필



요하거나 공사자재 등을 쌓을 수 있는 약간의 여유부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은 좌우로 굴곡이 많은 도로구간으로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 약 900m 지점에 40km/h 이하의 속도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지점에 이르기 약 100m전에 공사구간이므로 속도를 30km/h 이하로 줄일 것임을 알리는 공사 안내표지판이 세 곳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곡선 도로의 방향을 안내하는 화살표 모양의 갈매기 표지판 등도 설치되어 있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1. 5. 24.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목적으로 여러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사들로부터합계 514,343,516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바,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1고단2885)에서 2013. 4. 17. 무죄가 선고되었고,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제2심(부산지방법원 2013노1401)에서 2013. 6. 28. 항소기각판결이선고되어 2013. 7. 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도로의 점유·관리자인 피고가 가드레일이나 방호벽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의 제1항의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 전방에 속도제한표지판, 공사안내표지판, 갈매기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오히려 원고의 고의에 의해 발생된 사고이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등 참조).
- 2)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에 원래 설치되어 있었던 가드레일이 한전주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편의를 위해 철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위 기초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을 포함한 부근의 도로는 좌우로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원래 설치된 가드레일이 공사의 편의를 위해 철거된 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에 의해 발생된 사고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 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책임의 제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에 속도제한표지판 및 공사안내표지판 등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좌우로 굴곡진 이 사건 도로를 운행하면서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가드레일이 철거된 지점으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브레이크 작동이나 핸들의 조작을 통해 그 부근의 가드레일이 설치된 다른 곳이나 이 사건 추락지점 옆의 여유부지 등으로 정차하지 못한원고의 과실 등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 비율은 전체의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하다.

### 4.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 가. 일실수입

1) 계산의 기초사실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D

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연령: 43세 2개월 15일

라) 기대여명: 14.59년 (여명종료일: 2024. 5. 17.)

마)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2026, 8, 2,까지

### 2) 소득

가) 원고는 보통 인부로서 도시 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지역 일용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월 가동일수는 22일이다.

나) 원고는 사고 3개월 전까지 E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월 평균 4,542,927원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F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체를 설립하여 화물자동차의 운전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계속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등 참조),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부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운영하였던 E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09. 6. 30. 폐업한 점, ② 원고는 2008. 1. 1.부터 위 E이 폐업한 2009. 6. 30.까지의 소득 자료만제출하였을 뿐, 그 이후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원고가 화물운수업 등에 종사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다는 점, ③ 원고는 2009. 3.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원고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F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영업을 통해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전에 위 회사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화물운수업을 통해 실질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수업을 통해 월평균 4,542,927원의 소득이 있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노동능력상실률: 100%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Ⅲ-D)

#### 4) 계산

이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액 란 기재와 같이 246,882,8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 1) 기왕 치료비

53,119,461원[H병원 5,409,540원(원고는 5,445,140원을 구하나 위 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5,409,540원만이 인정된다) + I병원 17,625,611원 + J병원 1,398,370원 + K병원 1,260,670원 + L병원 27,372,890원 + M병원 52,380원(원고는 위 병원에서 신체감정시 지급한 진료비 1,500,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위 각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향후 치료비

- 가) 필요한 치료 내역과 소요비용
- ① 여명기간 동안 한달에 1회 외래진료(11,420원/1회), ② 여명기간 동안 1년에 15일씩 입원치료(45,000원/1일), ③ 증상고정 후 3년 동안 주 5회 물리치료, 이후 여명기간 동안 주 2회 물리치료(온습포치료 2,184원/1회, 초음파치료 2,964원/1회, 복합운동치료 20.150원/1회, 매트 및 이동치료 37.115원/1회)

#### 나) 계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위 향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5. 15. 처음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원고의 향후 치료비를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향후 치료비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68,196,995원이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개호비

1) 개호의 필요성 및 개호인의 수

체위변경, 이동, 식사, 개인위생, 대소변처리 등을 위해 여명 기간 동안 수면시간 제외하고 계속적인 개호가 필요하다. 1인의 개호인의 일용노임이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2인의 개호인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 2) 계산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개호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기간별 개호비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개호비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636,397,766원이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보조구 구입비용

여명기간 동안 ① 의자차(단가 800,000원, 수명 5년), ② 욕창방지용 방석(단가 360,000원, 수명 5년), ③ 욕창방지용 특수침대 매트리스(단가 400,000원, 수명 5년)가 각 필요한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보조구 구입비용을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보조구 비용 합계란 기재와 같이 3,847,896원이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장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의 위자료를 4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 바.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합계 1,008,445,015원(=일실수입 246,882,897원 + 기왕 치료비 53,119,461원 + 향후 치료비 68,196,995원 + 개호비 636,397,766원 + 보조구 구입비용 3,847,896원)이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201,689,003원(=1,008,445,015원 × 0.2)이 되며, 여기에 위자료 40,000,000원을 포함하면 피고의 손해배상금액은 241,689,003원(=201,689,003원 + 40,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241,689,0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09. 10. 20.부터 피고가 이



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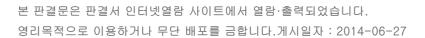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안현진

판사 권주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2014-06-27







사건:	H::13가합15831 설명 A <b>향후</b> 치료비		료비	68	,196,995										
중류:	외래진료비	수명:	<u></u>	₫ <b>중</b> f	: 입원치료비	수명			물리치료비	수명:		년 종류:[	물리치료바	수명	
단가: 최초필요일:	11,420 2014-5-15	수치합계	1 82.8410	일 단2 최초필요일		수치합계	7.5447	훻 단가: 최초필요일:	1,248,260 2014-5-15	수치합제:	27,7659	월 단가: 최초필요일:	499,304 2017-5-15	수치함계	1 % 55.0751
필요최준일:	2024-5-17	비용총액	946,044	필요취증일	2024-5-17	비용총액	5.092.672	필요최중일:	2017-5-14	비용총액	34,659,062	필요최종일:[	2024-5-17	비용총액	27,499,217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u> </u>		접수	호프수치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순번	필요렇시	<u>작</u> 수	호프수치
1 2	2014-5-15 2014-6-15	54 55	0.8163 0.8135	1 2		54 66	0.8163 0.7843	1 2	2014-5-15 2014-6-15	54 55	0.8163 0.8135	1 2	2017~8~15 2017~6~15	90 91	0.7272 0.7250
3	2014-7-15	56	0.8108	3	2016-5-15	78	0.7547	3	2014-7-15	56	0.8108	3	2017-7-15	92	0.7228
4	2014-8-15 2014-9-15	57 58	0.8080	4		90 102	0.7272 0.7017	4 5	2014-8-15 2014-9-15	57 58	0.8080 0.8053	4 5	2017-8-15	93 94	0.7207 0.7165
6	2014-10-15	59	0.8026	6	2019-5-15	114	0.6779	6	2014-10-15	59	0.8026	6	2017~10-15	95	0.7164
7 8	2014-11-15	60 61	0.8000	7		126 138	0.6557 0.8349	7 8	2014-11-15	60 61	0.8000 0.7973	7 8	2017-11-15	96 97	9.7142 9.7121
9	2015-1-15	62	0.7947	9	2022-5-15	150	0.6153	9	2015-1-15	62	0.7947	9	2018-1-15	98	0.7100
10 11	2015-2-15 2015-3-15	63 64	0.7920 0.7894	10		162 174	0.5970 0.5797	10 11	2015-2-15 2015-3-15	63 64	0,7920 0,7894	10 11	2018-2-15 2018-3-15	99 1 <b>00</b>	0.7079 0.7058
12	2015-4-15	65	0.7868					12	2015-4-15	65	0.7868	12	2018-4-15	101	0.7038
13 14	2015-5-15 2015-6-15	66 67	0.7843					13 14	2015-5-15 2015-6-15	66 67	0.7843 0.7817	13 14	2018-5-15 2018-6-15	102 103	0.7017 0.6997
15	2015-7-15	68	0.7792					15	2015-7-15	68	0.7792	15	2018-7-15	104	0.6976
16 17	2015-8-15 2015-9-15	69 70	0.7766 0.7741					16 17	2015-6-15 2015-9-15	69 70	0.7766 0.7741	16 17	2018-9-15 2018-9-15	105 106	0.6956 0.6936
18	2015-10-15	71	0.7717					18	2015-10-15	71	0.7717	18	2018-10-15	107	0.6916
19 20	2015-11-15 2015-12-15	72 73	0.7692 0.7667					19 20	2015-11-15	72 73	0.7692 0.7657	19 20	2018-11-15	108 109	0.6896 0.6876
21	2016-1-15	74	0.7643					21	2016-1-15	74	0.7643	21	2019-1-15	110	0.6857
22 23	2016-2-15 2016-3-15	75 76	0.7619 0.7594					22 23	2016-2-15 2016-3-15	75 76	0.7619 0.7594	22 23	2019-2-15 2019-3-15	111	0.6837 0.6818
24	2016-4-15	77	0.7570					24	2016-4-15	77	0.7570	24	2019-4-15	113	0.6798
25 26	2016-5-15 2016-6-15	78 79	0.7547 0.7523					25 26	2016-5-15 2016-6-15	78 79	0.7547 0.7523	25 26	2019-5-15 2019-6-15	114 115	0.6779 0.6760
27	2016-7-15	80	0.7500					27	2016-7-15	80	0.7500	27	2019-7-15	116	0.6741
28 29	2016-8-15 2016-9-15	81 82	0.7478 0.7453					28 29	2016-8-15	81 82	0.7476 0.7453	28 29	2019-8-15 2019-9-15	117 118	0.6722 0.6703
30	2016-10-15	83	0.7430					30	2016-10-15	83	0.7430	30	2019-10-15	119	0.6685
31	2016-11-15 2016-12-15	84 85	0.7407 0.7384					31 32	2016-11-15	84 85	0,7497 0,7384	31 32	2019-11-15 2019-12-15	120 121	0.6666 0.6646
32 33	2017~1-15	86	0.7361					33	2017-1-15	86	0.7361	33	2020-1-15	122	0.6629
34	2017-2-15	87	0.7339					34 35	2017-2-15 2017-3-15	87 88	0.7339	34 36	2020-2-15	123 124	0.6611
35 36	2017-3-15 2017-4-15	88 89	0.7317 0.7294					36	2017-4-15	89	0.7294	36	2020-4-15	125	0.6575
37	2017-5-15	90	0.7272									37	2020-5-15	126	0.6557
38 39	2017 <del>-6-</del> 15 2017-7-15	91 92	0.7250 0.7228									38 39	2020-6-15 2020-7-15	127 128	0,6539 0.6521
40	2017-8-15	93	0.7207									40	2020-8-15	129	0.6504
41 42	2017-9-15 2017-10-15	94 95	0.7185 0.7164									41 42	2020-9-15 2020-10-15	130	0.6486 0.6469
43	2017-11-15	96	0.7142									43	2020-11-15	132	0.6451
44 45	2017-12-15	97 98	0.7121									44 45	2020-12-15	193 134	0.5434 0.6417
46	2018-2-15	99	0.7079		•							46	2021-2-15	135	0,6400
47 48	2018-3-15 2018-4-15	100	0.7058									47 48	2021-3-15	136 137	0.6382 0.6366
49	2018-5-15	102	0.7017									49	2021-5-15	138	0.6349
50 51	2018-6-15 2018-7-15	103 104	0.6997 0.6976									50 51	2021-6-15 2021-7-15	139 140	0.6332 0.6315
52	2018-8-15	105	0,6956									52	2021-8-15	141	0.6299
53 54	2016-9-15 2018-10-15	105 107	0.6936 0.6916									53 54	2021-9-15 2021-10-15	142 143	0.6282 0.6266
55	2018-11-15	108	0.6896									55	2021-11-15	144	0.6250
56 57	2018-12-15 2019-1-15	109	0.6876 0.6857									56 57	2021-12-15	145 146	0.6233 0.6217
57	2019-2-15	111	0.6837									58	2022-2-15	147	0.6201
59 60	2019-3-15	112	0.6818 0.6798									59 60	2022-3-15 2022-4-15	148 149	0.6185 0.6169
61	2019-5-15	114	0.6779									61	2022-5-16	150	0,6153
62 63	2019-6-15 2019-7-15	115 116	0.6760 0.6741									62 63	2022-6-15 2022-7-15	151	0.6138 0.6122
64 65	2019-8-15 2019-9-15	117 118	0.6722 0.6703									64 65	2022-8-15 2022-9-15	153 154	9.6106 9.6091
66 67	2019-10-15 2019-11-15	119 120	0.6665									66 67	2022-10-15	155 156	0.6075 0.6060
68 69	2019-12-15	121 122	0.6648 0.6629									66 69	2022-12-15 2023-1-15	157 158	0.6045 0.6030
70 71	2020-2-15	123	0.6611 0.6593									70 71	2023-2-15 2023-3-15	159	0.6015 0.6000
72	2020-4-15	125	0.6578									72	2023-4-15	161	0.5985
73 74	2020-5-15 2020-6-15	125	0.6557 0.6539									73 74	2023-5-15 2023-6-15	162 163	0.5955
75 76	2020-7-15 2020-8-15	128 129	0.6521 0.6504									75 76	2023-7-15 2023-8-15	164 165	0.5940 0.5925
77 78	2020-9-15 2020-10-15	130 131	0.6486 0.6469									77 78	2023-9-15 2023-10-15	166 167	0.5911 0.5896
79 80	2020-11-15	132	0.6451 0.6434									79 80	2023-11-15	168	0.5882 0.5867
81	2021-1-15	134	0.6417 0.6400									81 82	2024-1-15 2024-2-15	170 171	0.5853 0.5839
82 83	2021-3-15	135 136	0.6382									83	2024-3-15	172	0.5825
84 85	2021-4-15 2021-5-15	137 138	0.6366 0.6349									84 85	2024-4-15 2024-5-15	173 174	0.5811 0.5797
86 87	2021-6-15 2021-7-15	139 140	0.6332 0.6315												
88 89	2021-8-15 2021-9-15	141	0.6299												
90 91	2021-10-15	143	0.6266 0.6250												
91	*AE1-11-15	177	J. 48.04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 순번	필요얇시'	월수 호표수치	숲번	필요열시	餐个	호프수치	순번	필요일시	호프수치
92	2021-12-15	145	0.6233			ALCEN A							
93	2022-1-15	146	0.6217										
94	2022-2-15	147	0.6201	set.									
95	2022-3-15	148	0.6185	<b>జ</b> రీ									
96	2022-4-15	149	0.6169	9'									
97	2022-5-15	150	0,6153	*									
96	2022-6-15	151	0.6138										
99	2022-7-15	152	0.6122										
100	2022-8-15	153	0.6108										
101	2022-9-15	154	0.6091										
102	2022-10-15	155	0.6075										
103		156	0.6060										
104		157	0.6045										
105		168	0.6030										
106		159	0.6015										
107		160	0.6000										
108		161	0.5985										
109		162	0.5970										
110		163	0.5955										
111		164	0.5940										
112		165	0.5925										
113		166	0.5911										
114		167 168	0.5896 0.5882										
115		169	0.5867										
116		170	0.5853										
117		171	0.5839										
118 119		172	0.5825	46									
120		173	0.5811	-									
121		174	0.5797	0.75									
121	£4£4-0-10	.,,,	0.0101	***									